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 <개정 2024. 1. 11.>

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

발급번호		
제대군인	구분	등록번호
	성명	생년월일
용도 및 제출처	용도	제출처

위 제대군인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유의사항

※ 이 확인서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,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확인				
우편번호	주소		전화번호	팩스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